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 제 63 호

2017. 9. 25.

건명	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사회복지과)		
제안 및 제출자	논산시장	제안연월일	2017. 9. 8.
소관위원회	행정자치위원회	회부연월일	2017. 9. 8.

보 고 내 용

□ 제안이유

- 「논산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2조의2에 명시된 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양성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등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에서 2022년 12월 31일로 연장 (안 제2조의2)

□ 검토의견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42조에 따라 양성평등의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간이 2017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기 위한 사항으로
- 기타 내용과 형식이 개정취지에 부합하고,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제반사항을 준수 하였으며,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 제4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됨